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0차 정무위원회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원장 임기만료 3개월 전 후임자 선임절차 개시〉
■ 김동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903호)

2025. 11.

정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선 주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동아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9. 11.
3. 회 부 일 : 2025. 9.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함) 원장의 임면권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함)의 이사장에게 부여하고, 원장을 임명할 때에 공개모집, 원장 추천위원회의 추천 등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원장 재임 기간 중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실적 및 경영내용이 우수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을 재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연구기관 원장의 법정 임기(3년)가 종료됐음에도 법이 정한 원장 임명절차(차기 기관장 임명 또는 재선임 심사)가 진행되지 않아 차기 원장 선출 전까지 직무대행 체제로 임시 운영되고, 기관장 공백이 길어지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음.

임명 지연과 이에 따른 기관장 공백 장기화는 기관의 책임 경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중·장기적인 국책연구 방향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한편, 비슷한 문제를 겪었던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구기관들의 경우 올해 1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차기 원장 임명절차가 지연되지 않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음.

이에 경제·인문사회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원장 임명과 재선임 절차에 대해서도 재직 중인 연구기관 원장의 임기만료일부터 3개월 이전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5항 신설).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함) 원장의 임기가 만료되기 3개월 전부터 후임 원장의 선임절차를 착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2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① ~ ④ (생략) <u><신설></u> ⑤·⑥ (생략)	제12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이사장은 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절차에 대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인 원장의 임기만료일로부터 3 개월 이전에 착수하여야 한다. ⑥·⑦ (현행 제5항 및 제6항 과 같음)

- 현행법 제12조¹⁾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²⁾는 연구기관의 원장의 임면권은 연구회 이사장이 행사하도록 하면서 원장 임명 시에는 후보자를 공개모집하거나 원장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이사회³⁾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1) 제12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① 연구기관의 원장 및 감사는 연구회의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장을 임명할 때에는 그 후보자를 공개모집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장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2) 제8조(연구기관 임원의 임면) ① 연구기관의 원장 및 감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연구회의 이사장이 이사회³⁾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 개정안은 연구기관 원장의 임기가 만료되기 3개월 전에 후임 원장의 선임절차를 착수하도록 함으로써 기관장의 공백 발생을 최소화하려는 것임.³⁾
- 개정안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기관장 공백을 최소화하여 책임 경영을 도모하고 중·장기 연구 강화 등에 긍정적이라는 점에서 찬성하는 의견임.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항⁴⁾에서도 이사장이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인 원장의 임기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후임자의 임명절차에 착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안은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봄.⁵⁾

문 의 처

02)6788-5109

3) 2025년 11월 10일 현재, 공석인 연구기관장은 2025년 7월 중도사임한 국토연구원(임기만료일: 2026년 8월 23일)이 유일함.

4) 제12조(원장의 임면 및 임기) ⑤ 이사장은 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절차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인 원장의 임기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착수하여야 한다.

5) 참고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불가피한 사유를 다음의 3가지로 규정함.

1. 원장이 임기만료일 전에 사임하는 경우
2. 제8조의2에 따라 연구회의 이사장이 원장을 임기만료일 전에 해임하는 경우
3.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의 자체평가에 대한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상위평가 결과가 원장의 임기만료일로부터 5개월 전까지 확정되지 않은 경우